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손해보험가입)를 제7조 제3항으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수탁관리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국민생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제2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1인 2종목이상 신청시에는 사용료를 할인 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국민생활관 사용료 징수 요율표

○ 대인 사용료

구 분	사용일수		어 린 이	청소년·군인	성 인	노 인	비 고
수 영 장	월회원 (월~일)		28,000원	34,000원	40,000원	28,000원	
	1일	개인	2,000원	2,200원	2,500원	2,000원	
	회원	단체	1,500원	1,700원	2,000원	1,500원	
헬 스 장	월회원 (월~일)		20,000원	30,000원	30,000원	20,000원	
에어로빅장	월회원 (월~일)		20,000원	25,000원	25,000원	20,000원	

※국민생활관에서 주관하는 체육, 문화, 청소년 프로그램등의 수강료 및 사용료는 별도 산정한다

<정의>

- 월 사용료는 지도자의 수강료 포함 임.
- 6세 미만은 보호자와 동시 입장하여야 함.
-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입장으로 주 7일(월~일) 사용하되 수업은 주 5일(월~금)을 말함
- “청소년”이라 함은 중, 고, 대학생을 말함
- “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증 및 기타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
-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자.
- “단체”라 함은 단체구성이 3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함.

○ 시설 사용료

구 분	사 용 목 적	단 위	요 금		비 고
			평 일	토·일·공휴일	
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30,000원	40,000원	
		야간	40,000원	50,000원	
	체육행사	주간	90,000원	120,000원	
		야간	120,000원	150,000원	
	체육행사 이외	주간	120,000원	150,000원	
		야간	150,000원	180,000원	
소극장 (예식장)	공연,발표,교육,행사	4시간 이내	40,000원	50,000원	
	예식행사	2시간 이내	70,000원	90,000원	
강의실	발표, 교육, 행사	㎡당/4시간 이내	100원	120원	
전시실	전시	㎡당/4시간 이내	100원	120원	

※ 주간 사용은 일출부터 일몰전까지 8시간 이내임.

※ 야간 사용은 18:00 ~ 22:00 까지 (동계는 17:00 ~ 21:00 까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1】

국민생활관 사용료 징수 요율표

○ 개인 사용료

구 분	사용일수	어 린 이	청소년 · 군인	성 인	노 인	비 고
수 영 장	<u>월(월~토)</u>	28,000원	34,000원	40,000원	28,000원	월 이용료는 지도자 수강료 포함임
	<u>1일</u>	2,000원	2,200원	2,500원	2,000원	
	<u><신 설></u>					
헬 스 장 에어로빅	<u>월(월~토)</u>		30,000원	30,000원	20,000원	수강료 포함임
	<u>월(월~토)</u>	20,000원	25,000원	25,000원	20,000원	

※국민생활관에서 주관하는 체육, 문화, 청소년 프로그램등의 수강료 및 사용료는 별도 산정한다

<신 설 >

○ 전용 사용료

구 분	사 용 목 적	단 위	요 금		비 고
			평 일	토 · 일 · 공휴일	
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30,000원	40,000원	
		야간	40,000원	50,000원	
	체육행사	주간	90,000원	120,000원	
		야간	120,000원	150,000원	
	체육행사 이외	주간	120,000원	150,000원	
		야간	150,000원	180,000원	
소극장 (예식장)	공연,발표,교육,행사	4시간 이내	40,000원	50,000원	
	예식행사	2시간 이내	70,000원	90,000원	
강의실	발표,교육,행사	㎡당/4시간 이내	100원	120원	
전시실	전시	㎡당/4시간 이내	100원	120원	

<신 설 >

<개정안>

【별표1】

국민생활관 사용료 징수 요율표

○ 대인 사용료

구 분	사용일수		어 린 이	청소년·군인	성 인	노 인	비 고
수 영 장	<u>월회원</u> (월~일)		28,000원	34,000원	40,000원	28,000원	
	<u>1일</u> <u>회원</u>	<u>개인</u>	2,000원	2,200원	2,500원	2,000원	
		<u>단체</u>	<u>1,500원</u>	<u>1,700원</u>	<u>2,000원</u>	<u>1,500원</u>	
헬 스 장	<u>월회원</u> (월~일)		20,000원	30,000원	30,000원	20,000원	
에어로빅장	<u>월회원</u> (월~일)		20,000원	25,000원	25,000원	20,000원	

※국민생활관에서 주관하는 체육, 문화, 청소년 프로그램등의 수강료 및 사용료는 별도 산정한다

<정의>

- 월 사용료는 지도자의 수강료 포함 임.
- 6세 미만은 보호자와 동시 입장하여야 함.
-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 입장으로 주 7일(월~일) 사용하되 수업은 주 5일(월~금)을 말함
- “청소년”이라 함은 중, 고, 대학생을 말함
- “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종 및 기타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인 자.
-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자.
- “단체”라 함은 단체구성이 30인 이상이고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함.

○ 시설 사용료

구 분	사 용 목 적	단 위	요 금		비 고
			평 일	토 · 일 · 공휴일	
체육관	체육경기	주간	30,000원	40,000원	
		야간	40,000원	50,000원	
	체육행사	주간	90,000원	120,000원	
		야간	120,000원	150,000원	
	체육행사 이외	주간	120,000원	150,000원	
		야간	150,000원	180,000원	
소극장 (예식장)	공연, 발표, 교육, 행사	4시간 이내	40,000원	50,000원	
	예식행사	2시간 이내	70,000원	90,000원	
강의실	발표, 교육, 행사	㎡당/4시간 이내	100원	120원	
전시실	전시	㎡당/4시간 이내	100원	120원	

※ 주간 사용은 일출부터 일몰전까지 8시간 이내임.

※ 야간 사용은 18:00 ~ 22:00 까지 (동계는 17:00 ~ 21:00 까지)

수 정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7조(재산의 관리)①수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을 국민생활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재산의 신규 취득처분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신설></u>	제7조(재산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수탁관리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①~②(개정안과 같음) ③(개정안과 같음)
제9조(손해보험가입) 수탁관리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국민생활관 시설을 이용 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용허가) 국민생활관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0조(사용료등징수)①수탁관리자는 국민생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민간시설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무의탁노인, <u>생활보호대상자</u>, 불우청소년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 감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1】 내지 【별표3】 과 같다. ④징수된 사용료는 국민생활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u><신설></u>	제10조(사용료등징수)①(현행과 같음) ②...<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u>, ... 한다. ③ ~ ④(현행과 같음) ⑤1인 2종목이상 신청시에는 사용료를 할인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등징수)①(개정안과 같음) ②...<u>,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u>, ... 한다. ③ ~ ④(개정안과 같음) ⑤1인 2종목이상 신청시에는 사용료를 할인 할 수 있다